

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7. 19(목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7. 24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7. 24(화)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관광과장)

- 동강스카이라인 등 마하생태관광지 내 시설물이 증가되어, “시설물” 정의를 수정하고,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예약취소 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반환 기준을 정하며,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마하생태관광지내의 동강스카이라인 완공 등에 따라 사용료징수 기준과 사용료 반환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관광지 내 민박동, 생태주택관, 동강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였으며

- 관람료 면제 및 관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 수정 보완하고
 - 일부 조문을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정비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징수 및 반환 기준을 신설하면서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- 다만, 사업장 현지확인시에 수차례 지적하였듯이 계절별, 성수기 별로 운영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, 군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과 함께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(수정내역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 별표1,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 및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관람료 주석란, ※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	제5조 별표1,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 및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관람료 주석란, ※ 평창군민은 일반 개인 관람료의 50%,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하여 적용	제5조 별표1,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 및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관람료 주석란, ※ 평창군민은 개인 관람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	제5조의 2 별표 2, 시설 사용료 중 동강스카이라 인 표 아래 “※ <u>평창군민은 개인사용 료의 5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</u> “ (신설)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표 아래 “※ <u>평창군민은 시설사용 료의 20%를 할인하여 적용한다</u> “ (신설)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